1.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O 발의일자 : 2019년 9월 6일

○ 발 의 자 : 윤영애·김성태·이영애·이태손·임태상·장상수·전경원 의원

O 회부일자 : 2019년 9월 9일

O 상정일자 : 제26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9년 9월 20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윤영애 의원)

□ 제안이유

- 우리사회는 정보·지식산업시대로, 정보와 지식이 물질적 자원이나 설비 이상으로 중요하게 관리·이용되고 있으며,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공공정책 또한 그 결정과 집행에서 각종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
- 하지만 공무원 조직이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각종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용역을 통해 정책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개발·관리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용역은 정책계획단계에서의 정책효용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사전예측자료로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사업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최근에는 정책실패 방지를 위한 용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용역의 품질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용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용역사전심의제를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사전심의제는 용역의 시행이전, 해당 용역의 적정성을 점검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최근에는 정부매칭사업이나 공모 사업 등 단기과제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재의 용역 관련 규정으로는 자칫 행정적으로 정한 절차에 매여, 긴급한 사안을 탄력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또한, 현재의 규정은 한번 심의한 용역에 대한 재심의 규정이 없어, 자칫 심의위원회를 거친 용역을 확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용역 수행 중 정책계획의 변경을 오히려 어렵게 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용역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O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의 취지에 따라 제5조와 제8조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O 안 제5조는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용역심의위원회 내분야별 위원을 통한 긴급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O 안 제8조에서는 용역의 효용성 향상을 위한 재심의 규정을 추가 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곽영구)

O 조례안 개정의 목적은

▶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상 나타난 다소 불합리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용역사전심의제의 효율성과 용역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O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 안 제5조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심의 분야에 해당하는 위원들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제5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참고 1]》

▶ 위원구성

- 17명 당연직(내부) 4명 / 위촉직 13명
- ▶ 위촉직 현황
 - 학술·문화·복지 분야(5명), 건설·교통 분야(4명), 경제·과학 분야(4명)

- ► 안 제8조에서는 제3호의 신설로 관련 법령에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용역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용역심의의 중복성을 배제토록 하였으며,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참고 2]
- ▶ 안 제8조의2에서는 재심의 대상 용역의 기준 신설로 재심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엄격한 용역심의로 용역 관리의 체계성을 높이고자하였음.

참 고 1 용역심의위원회 구성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임명(위촉)일	심의분야
당연직 (4명)	위원장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정 영 준	′17. 08. 14.	당연직
	위 원	"	경제국장	홍 석 준	′ 19. 01. 01.	"
	"	"	문화체육 관광국장	김 호 섭	′19. 01. 01.	′ "
	"	"	도시재창조 국장	권 오 환	′19 01. 01.	"
	위 원	대구가톨릭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조 성 자	′18. 04. 30.	학술·문화 ·복지분야
	"	영남이공 대학교	사회복지 • 보육 교수	이하예진	"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경 은	"	
	"	(사)한국 무용협회	대구광역시 지회장	강 정 선	"	
	"	대경대학교	병원의료행정 학과 교수	최종오	"	
	"	경일대학교	철도학과 교수	안 용 모	"	건설 · 교통 분야
위촉직 (13명)	"	호진건축사사 무소	대표이사	정 명 숙	′17. 12. 29.	
	"	영남대학교	건설시스템 공학과 교수	최 현 일	′18. 04. 30.	
	"	㈜한도 엔지니어링	상하수도부 상무	이종탁	"	
	"	경북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허 영 우	"	
	"	영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김 혜 경	′17. 12. 29.	경제·과학 분야
	"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홍주	′18. 04. 30.	
	"	대구가톨릭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 시 진	"	

참 고 2 타 시도 용역심의 제외대상

구 분	제 외 대 상	비고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산 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조사·검사·시험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매년 반복되는 용역 전액 국고보조로 추진하는 용역 관련규정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강행하고 있는 용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1.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매년 또는 격년으로 상시 반복적인 용역 2. 전액 국고보조 용역 3. 계속사업 등으로 심의된 용역 4. 그 밖에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울산광역시 용역 관리 조례	 해마다 반복되는 용역 전액 국고 보조로 시행하는 용역 관계 법령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용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 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설문 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구 분	제 외 대 상	비고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기술·전산·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도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도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한 용역과제는 제외한다 .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단, 이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상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3. 기술·디자인·전산·임상연구, 회계용역,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4. 천재지변 복구, 법정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인 경우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과 그 밖에 시급한 발주가 요구되는 용역으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학술용역 2. 관계 법령에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학술용역 3. 단순 반복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술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학술용역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분야별 위원으로만 심의하는 것으로 개정 했는데, 전문성 확보에 대한 문제는 없을지?	○ 용역심의위원회는 3개의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긴급한 용역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음.
○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용역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음. 긴급을 요하는 용역이라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인데, 분야별 위원으로만 심사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 용역심의 절차를 말씀 드리면, 먼저 각 부서에서 용역 사전심의를 신청하면 실무적으로 용역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한 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한 번 더 사전검토를 실시함. 그 후에 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고 심의 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바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한번 심사를 받게 되므로 용역을 충분히 검토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음.

5. 토론요지

O 없 음

6. 수정안 요지

O 없 음

7. 심사결과

O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O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O 없 음